• 논단 •

일본(日本)의 공증제도(公證制度)

조 희 종
대한공증협회 협회장
법무법인서부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머릿말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3호로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의 현행공증인법(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음)은 1908년 (明治 41년) 4월 14일 법률 제53호로 제정 공포된 일본의 현행 공증인법(최종개정 平成 18년 6월 2일 법률 제50호)과 매우 유사하다. 이 일본의 공증인법은 독일법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공증제도는 공증제도의 계통에서 보면 라틴국가법계(대륙법계)에 속한다. 세계의 공증제도는 라틴법계와 영미법계(앵글로색슨)로 나누어져 있다.

라틴계 국가들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에 속하는데 라틴계국제공증인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Latin Notaries(줄여서 U.I.N.L이라 한다)를 조직하여 1948년 10월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일본은 1979년 제14회 회의 때 가입되었다. 한국은 2005년 10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입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U.I.N.L의 회원은 약 76개국이다. Asia 지역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의 3국이 가입되어 있다. 라틴계에 있어서의 공증인은 고도의 법조(法曹)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하여 앵글로색슨계(영미법계)에서는 실무가에 지나지 않는다. 영미법계인 미국에서는 공증인의 법적소양의 유무를 중시하지 않는다. 공증인의 임무는 인증에 한정되고, Notary public이라 부르는데 반드시 법률전문직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는 1970년의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의 제정 · 시행으로 공증합동법률사무소라는 새로운 공증제도가 생기게 되었고(2006년 1월 27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法務法人)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무법인에게 공증을 할 수 있게 하여 이른바 변호사겸직공증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공증인의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 점(공증인법 제15조 재임명가능, 재임명시는 3년임, 일본은 7년임) 등에서 일본의 공증제도와 다른 점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는 거의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의 공증제도를 한 번쯤 살

펴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공증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여기에 그 대강을 소개한다.

Ⅱ. 역사(歷史)

일본에서는 에도(江戶)시대 이전에도 부동산의 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서에 친척, 명주(名主, 선정을 배푸는 군주), 조직의 우두머리(組頭), 대관(代官)등이 도장을 찍어 판단을 해주는 '여인가판'(與印加判)의 관행이 있어 계약이행이 보증되고 증서의 권위유지가 보호되어 왔다. 그 후 '여인가판'의 집행인으로서 1872년(明治 5년) 8월 3일 태정관무호달사직무정제(太政官無號達司法職務定制)에 의하여 증서인(證書人)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 뒤 1875년(明治 8년) 4월 10일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제53호로 위 증서인(證書人)이 여인가판(與印加判)한 증서(證書)를 공정증서(公正證書)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행 일본공증제도의 부분적 기초가 되었다.

그 밖에 토지조세제도의 개정이 토지제도의 개정을 필요하게 하였고, 또 부동산매매, 양도에 따른 지권(地券)의 개서(改書) 및 공무원의 인증(認證)이 필요하게 되어 1876년(明治 19년) 8월 11일 '공증인규칙'이 공포·시행되었다. 1877년(明治 20년) 2월 16일에 공증인등용시험이 실시되었고, 1879년(明治 22년) 4월 1일에 처음으로 공증인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08년(明治 41년) 4월 14일 법률 제53호 공증인법(公證人法)이 제정·공포되어 현행 공증제도가 확립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부분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일본헌법 시행전의 공증인은 지방재판소 소속이었으나 삼권분립 강화방침에 따라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소속되게 되었다.

Ⅲ. 공증인

1. 임명

공증인은 법무대신이 임명한다(공증인법 제11조,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임명행위의 성질에 관하여는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설도 있으나, 피임명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라는 것이 정설이다.

공증인이 되려면 일본 국민으로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공증실무의 수습을 완료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시험과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은 법무대신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만 그치고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모든 공증인은 공모절차를 거치기로 되어 있어 법 제13조에 의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등 법조자격자 중에서 무시험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하고, 법 제13조의2 법무사무관 경험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우는 연 1회 결원이 예상되는 사무소에 대하여 공모하고 있다. 사무관 중에서 공증인을 선발할 때는 정령(政令)이 정하는 심의회(審議會) 등의 선고(選考)를 거쳐 시험 및 실지수습을 시킨 후 공증인이 된다. 공증인의 정년은 70세이다(법 제15조).

실제로 위와 같은 자격자 중 재판관, 검찰관, 법무국장 등으로 장기간 법률실무에 종사하여 상당한 경력을 갖춘 자들이 공증인으로 임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법조경력 30년 이상 된 자들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60대 초반이 많다.

위와 같은 공증인 임명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 파산 또는 가자분산(家資分散)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자, 판면처분을 받은 자, 징계처분으로 면관(免官) 또는 면직된 자 등으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법 제14조 결격사유 참조)은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임명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도 품성이 고결하여 사회의 신용을 얻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야 하므로 학식과 품성도 고려된다.

2. 소속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시행 전에는 공증인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 소속으로 되었다(법 제10조). 법무대신은 공증인을 임명함에 있어 그 공증인이 소속할 법무국 또는 지방국(地方局)을 지정한다(법 제11조). 이 소속의 지정은 임명과 동시에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명과 소속 지정은 별개의 행위이다. 소속지정은 보직 내지 근무지의 지정에 상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소속 지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집행구역이 정해지고(법 제17조), 공증인의 감독사무분장자가 정하여진다(법 제74조 제2항).

각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에 소속하는 공증인의 수는 법무국, 지방국 또는 이들 지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대신이 정한다(법 제10조 제2항). 1949년(昭和 24년) 6월 1일 법무성령 제10호 공증인정원규칙이 제정되었다. 2004년 1월 1일 현재 전국의 공증인 정원(定員)은 688명이고, 현역 공증인 수는 520명이며, 공증인사무소 수는 296개소이다.

3. 공증인 사무소

공증인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지역에 역장(役場,사무소)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지역은 그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내에 있는 지점을 말하는데 공증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18조 제2항). 또 많은 서류를 그 장소에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법 제25조) 역장(役場) 설치의 지정은 공증인의 직무권한의 집행 장소를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증인은 법무대신이 지정한 지역에 그 역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치, 건물의 구조 및 주위의 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소속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공증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이하 '규칙'이라 칭함). 역장 인가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소속법무국 관할 내의 구역 내의 다른 지점으로 역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역장 인가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규칙 제1조 제3항).

일반적으로 공증인 역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내화벽 시설을 갖춘 밀폐형 서류창고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으며 역장 내 캐비닛 같은 곳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동경시내의 각 공증인역장(公證役場)은 1년 이내 서류만 역장에 보관하고 1년이 경과한 서류는 동경지방공증인회가 운영하는 공동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어 각 역장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량은 많지 않다.

4. 임명절차의 실제

공증인의 임명, 소속 및 역장의 설치지의 지정은 각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지만, 절차의 실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다. 공증인 임명원(任命願)의 진달(進達)은 통상 지원자가 장차 소속하게 될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이 하는데 진달서에는 ① 공증인임용서, ② 이력서, ③ 호적등본, ④ 건강진단서, ⑤ 사무소 소재지 개략도 및 가옥창고의 평면도, ⑥ 공증인회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는 것 이외에 그 지원자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의 의견, 설치하려고 하는 역소의 소재지, 교통상황, 가옥의 구조, 창고의 설치 및 역장 내 거주의 가부 등을 상세히 부기하여야 한다.

5. 면직 및 실직

법무대신은 공증인이 ① 면직의 희망을 표시한 경우, ② 신원보증금 또는 그 보충액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연령이 70세에 달한 경우, ④ 심신의 쇠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공증인심사회의 의결을 거침)에는 면직된다.

실직은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공증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 을 말하는데 공증인 임용의 소극적 자격 요건으로서 열거된 ①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거나, ② 파산 또는 가자분산(家資分散)의 선고를 받거나, ③ 금치산 및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당연히 공증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6. 신분과 집무시간

(1) 신분

공증인은 임면, 급여, 분한(分限), 징계 등에 있어 공무원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증인은 형식적 의미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공증인법에 의하여 법무대신이 임면하고 같은 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채무명의가 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등 국가의 공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에는 공증인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공증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2) 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법무성 직원의 근무시간과 같다(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법무성 직원의 근무시간은 일반직직원의급여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요일 및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0시 30분까지 집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 등 긴급을 요하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 휴일 또는 집무시간 외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제2항).

7. 공증인의 보조자(서기)

공증인은 그 소속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의 인가를 얻어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공증인이 서기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서기가 될 자의 자필이력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서기의 고용은 공증인과 서기를 당사자로 하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 따라서 서기는 형식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상으로도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그 집무시간, 급여 등은 오로지 고용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8. 공증인단체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의 관할구역마다 공증인회가 설립되어 있고(규칙 제43조), 전국적으로는 전국의 공증인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일본공증인연합회가 있다(규칙 제49조). 공증인회와 일

본공증인연합회의 회칙의 작성과 명칭은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규칙 제45조, 제55조),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는 공증인회는 관할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일본공증인연합회는 법무대신에게 각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53조).

각 지역 공증인회의 회원은 그 지역내의 공증인이고(규칙 제44조), 일본공증인연합회의 회원은 각 지역의 공증인회와 공증인이다(규칙 제50조).

이와 같은 공증인의 조직은 공증사무의 개선 및 통일과 공증인의 품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증인회 및 공증인의 지도와 면학에 관한 사무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규칙 제43조 제2항, 제49조 제2항).

각 공증인회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일본공증인연합회는 법무대신에게 공증사무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답신(答申)할 수 있다(규칙 제47조, 제52조).

각 공증인회는 회원인 공증인에게 부정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상(行狀)이 있을 때는 이를 소속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공증인의 직무권한과 권리 • 의무

1. 직무권한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私書證書) 및 상법 제167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증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1조).

공증인의 직무권한은 공증업무의 범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증인들 사이에는 공증업무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증인의 직무의 중점을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두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법률상 특별히 증거력 또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사법상의 권리의 성립 또는 그 만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공증제도 창설의 이유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게 되자 경제생활도 복잡해지고, 또 법인의 활동분야도 점점 확대되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만으로 공증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 일본의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직무권한을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私署證書) 및 주식회사 등 법인의 기본적 조직규범인 원시정관(原始定款)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였고, 또 平成 18년 6월 2일의 공증인법 개정으로 전자적기록(電磁的記錄)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증인의 권한은 공증인법 제1조에 규정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서 공증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유언증서의 작성(민법 제969조, 제970조 제1항, 제972조, 제984조 등 참조)
2) 상속재산 목록의 작성(민법 제1011조 제2항)
3)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22조 5, 제26조)
4) 거절증서의 작성(拒絶證書令 제1조, 어음법 제44조, 제60조, 제77조, 수표법 제39조)
5) 확정일자의 부여(민법시행령 제5-8조)
6) 유가증권의 신탁재산의 표시(大正 11년 칙령 제519조)
7) 파산재단소속재산의 봉인평가의 입회등(파산법 제186조, 제188조)
8) 갱생회사(更生會社)의 재산평가의 입회(회사갱생법 제177조)
9) 저당증권채무자가 지불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증명(저당권권법 제27조 제2항)
10) 기업담보권의 설정 또는 변경계약(기업담보법 제13조)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나 전자적 기록이라 하더라도 공증인법이나 위 여러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공정력을 가지지 않는다(법 제2조). 여기서 공정력이라 함은 공정증서가 가지는 증거력, 집행력 등을 말한다.

2. 권리와 의무

(1) 수수료 등의 청구

공증인은 정령(政令, 공증인수수료령)에서 정한 수수료, 일당 및 여비, 송달우송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다(법 제7조).

또 수표 등은 공증인수수료령에 정하여진 일정액을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수료 등의 소정액을 감액함으로써 촉탁사건의 유치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액청구의 사실은 징계사유가 된다(법 제79조). 다만, 수수료 등의 지불능력이 없는 촉탁인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한 시정촌장(市町村長)의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지불이 유예된다(같은 령 제5조).

(2) 촉탁수탁의무(囑託受託義務)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법 제3조). 즉 촉탁을 수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촉탁을 거절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 촉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력을 가지지 아니한 문서작성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예컨대 법령에

위반된 사항, 무효 및 무능력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법 제26조)에 관한 증서작성의 촉탁, 외국어에 의한 증서작성의 촉탁(법 제27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사람의 착오가 없다는 것의 증명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촉탁(법 제28조 제2항, 제31조) 정규 수수료의 예납공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촉탁, 허가 또는 동의를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여한 제3자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촉탁하는 경우(법 제33조) 등은 거절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3) 묵비의무

공증인은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및 촉탁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그가 취급한 사건을 누설할 수 없다. 즉 취급한 사건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법 제4조). 이 묵비의무는 촉탁인이 사망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49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회를 하는 경우, 거절증서령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 국세기관 직원이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관계되는 상속세, 증여세의 조사, 징수에 대하여 필요가 있는 때 관계부분의 공정증서의 열람을 구하여 공증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촉탁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반 문제될 것이 없지만 1사건에 수인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증인이 이 의무에 위반하여 사건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 것 이외에 징계에 처하여 진다(법 제 79조). 또 비밀을 누설함으로서 촉탁인 기타의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공증인의 집행보조자인 서기에게는 묵비의무는 없지만 공증인은 사전에 서기에게 그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업상 누설 할 수 없는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을 받아야 하고(규칙 제6조), 서기가 비밀을 누설하여 촉탁인등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서기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4) 집무전념의 의무

공증인은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공무를 겸하고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법 제5조). 즉 공증사무의 종사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공증인은 실질상 국가공무원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무시간 및 직무상의 주의력의 전부를 그 직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직책수행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공증인이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본무인 공증사무에 열의가 없거나 촉탁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직무집행의 적정을 잃게 되어 결국에는 공증제도의 신용을 실추

시키고 국가가 공증기관을 설치한 목적에도 합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1) 직무집행의 구역 및 장소

① 직무집행 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 구역은 그가 소속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법 제7조). 따라서 공증인은 소속 법무국, 지방법무국의 관할구역 밖에 나가서는 어떠한 직무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구역은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구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직무집행의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촉탁하는 사건에 관해서만 직무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법원의 토지관할과 다르다.

② 직무집행의 장소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무소에서 직무를 집행한다(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자기의 직무구역 내라 하더라도 함부로 사무소 밖에 나가 직무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사무소의 성질상 한 공증인이 수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소의 출장소등의 출장지를 설치하지 못한다.

현행법에서는 합동사무소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규칙 제48조). 공증인 간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공증업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증인 1명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무소는 지방중소도시에 있는 161개소이고, 대도시에는 대부분 2인 내지 4인의 공증인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2004년 1월 1일 현재 전국의 공동사무소 수는 296개이다).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공증인 모모(某某)사무소라고 기재한 표찰(標札)을 게시하고(규칙 제2조), 또 사무소의 잘 보이는 장소에 수수료, 우편료, 일당 여비의 표준액, 직무시간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집행시간 외에도 촉탁에 응한다는 취지를 게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 대리인 또는 정직자의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잘 보이는 장소에 대리인 누구 또는 겸직자 누구라는 취지를 게시하여야 한다(규칙 제31조).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다(법 제18조 제2항 단서).

㉮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 내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공증인이 산림의 면적, 형상 또는 입목의 수량, 종류 등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와 같다.

㉯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법 제57조)
㉡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2) 사무처리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의 순서에 따라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는 공증인의 양식(良識)따라 판단할 일이지만 특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3) 신원보증금

공증인은 임명사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속한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신원보증금은 공증인이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채무 및 국가와 공증인과의 특별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또는 징계벌로서의 과료채무(법 제80조 제2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 또는 국채증권이다. 이 금전 또는 국채증권은 납부하게 되면 그 소유권은 국가에 이전되나 공증인의 신분상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반환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4) 서명 및 인감

공증인은 그 직인의 인감(印鑑)에 성명을 자서(自署)하여 소속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공증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매우 많고 그 서명 및 날인은 실제로 공정증서 또는 인증이 공정력을 가지기 위한 불가결의 요건이 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서명날인 하여야 할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② 공정증서 또는 인증정관의 원본이 멸실 되었기 때문에 공증인이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멸실한 원본 대신 보존하는 경우(법 제42조 2항, 제 62조의5 제2항)
③ 공정증서의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법 제48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그 원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공정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법 제52조, 제54조)
⑤ 촉탁인 기타 관계인이 스스로 작성한 증서 또는 부속서류의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법 제55조 제1항)
⑥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법 제59조)
⑦ 정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법 제62조의3, 제59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명은 자서(自署)를 의미한다.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직명,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23조).

(5) 제척(除斥)

공증인의 권한 행사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법정특수관계(제척원인)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공증인의 직무권한은 상호간의 권리행위에 개입하여 그 성립 및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공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일방의 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제척원인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공정력이 없는 무효의 공정증서로 해석되고 있다.

법률에 정해진 제척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또는 동거하는 친족일 때,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좌인일 때

③ 촉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때

④ 촉탁받은 사항에 대해 대리인이나 보좌인일 때 또는 대리인이나 보좌인이었을 때

(6) 서류의 보존 등

공증인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

① 서류

가. 공정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법 제25조, 제41조)

나. 인증정관 및 그 부속서류(법 제62조의3 제3항, 제62조의4)

다. 촉탁사건 관계서류(규칙 제25조 제2항)

라. 금융기관정리응급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

마. 회사정리응급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② 법령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

가. 증서원부(법 제45조, 제62조의3 제4항)

나. 인증부(법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3 제4항)

다. 신탁표시부(大正 11년 칙령 제519호 제2조)

라. 확정일자부(민법시행법 제5조, 제6조)

마. 계산부(규칙 제18조 제4호)

바. 거절증서등본편철장(거절증서령 제8조, 규칙 제18조 제1호)

사. 저당증권지불거절증명서등본편철장(규칙 제18조 제2호)

아. 송달관계서류 편철장(규칙 제18조 제3호)

이상의 서류, 장부는 사무소에 부속하는 창고 또는 견고한 건물 내에 보존하여야 한다(규칙 제6조 제1항). 공증인이 비치. 보존하는 서류 및 장부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도 공증서류의 보존창고에 대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공증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정(규칙 27조 참조)을 두고 있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 참고자료

(1) 日本의 公證制度, 法務部, 1996년

(2) 日本의 公證制度運營實態見聞記, 법무부 법무과장, 인권과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4년 6월

(3) 일본의공증인임용제도의 소개, 전병서,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8호, 2004.

(4) 日本 公證人法
(明治41년 4월 14일 법률 제53호, 最終 改正 平成 18년 6월 2일 法律 제50호)

(5) 日本 公證法施行規則
(昭和 24년 6월1일 法施行令 제9호, 最終 改正 平成 19년 3월 8일 法務省令 제7호)